

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. 8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8. 16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8. 30

(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도시경제과장 양정열

나. 제안사유

- 2004. 12. 27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연취락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집단취락의 체계적인 계획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, 관련법상 확보하여야 할 최소한의 공용부지(주차장, 소공원, 도로)를 계획함과 동시에 부정형적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정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

다. 주요내용

- 용역명 :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
- 용역사 : 신촌종합건설(주) 이형석, (주)신한항업 배상태

○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(안)

번호	구역명	용도지구	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기정	변경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소계	5개소	-	-	-	117,841	증)130,851	248,692	
1	바실	자연녹지	자연녹지 지역	화순읍 계소리 531번지 일원	32,768	-	32,768	제1종지구 단위계획 구역
2	세량	자연녹지	제1종 일반주거 지역	화순읍 세량리 348번지 일원	59,983	증)18,337	78,320	
3	앵부	자연녹지		화순읍 앵남리 350번지 일원	25,090	증)31,341	56,431	
4	동개	자연녹지		화순읍 동구리 134번지 일원	-	증)29,963	29,963	
5	반수	자연녹지		화순읍 수만리 586번지 일원	-	증)51,210	51,210	

○ 사업기간 : 2005년 ~ 2006년

○ 관계법령 및 근거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
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3. 결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4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5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6. 붙임 :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의회의견 제시
의 건